

# 알기 쉬운 국제인도법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Confédération suisse  
Confederazione Svizzera  
Confederaziun svizra

스위스연방 외교부



ICRC

대한적십자사 

# 색인

머리말 5

용어해설 8

## 가

가서명, 서명, 비준 [Initials, signature and ratification] 8

강제실종 [Enforced disappearances] 8

고문금지 [Ban on torture] 9

관습국제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9

구별 [Distinction] 9

국내 소요사태 [Internal disturbances] 10

국제연합(유엔) [United Nations(UN)] 10

국제인도법의 장려 [Promo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0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Commission] 11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11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12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2

국제형사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13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13

군사목표물 [Military objectives] 13

군사적 필요성 [Military necessity] 14

기본적 보장 [Fundamental guarantees] 14

## 나

난민 [Refugees] 15

내전 [Civil war] 15

## 다

다국적군 [Multinational forces] 15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6

덤덤탄 [Dumdum bullets] 16

## 라

로마규정 [Rome Statute] 16

리버, 프란시스 [Lieber, Francis] 16

## 마

몽트뢰 문서 [Montreux Document] 17

무기 [Weapons] 17

무력충돌 [Armed conflict] 18

문화재 [Cultural property] 18

민간군사보안기업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18

민간물자 [Civilian objects] 20

민간보안서비스제공자 국제행동규약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s] 20

민간인 [Civilians] 20

민방위 [Civil defence] 20

## 바

배신행위 [Perfidy] 21

보급 [Dissemination] 21

복구 [Reprisals] 21

부상자, 병자, 조난자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22

불필요한 고통 [Unnecessary suffering] 23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s] 23

비대칭 전쟁 [Asymmetric warfare] 23

비례성 [Proportionality] 24

## 사

생물무기 [Biological weapons]	24
소년병 [Child soldiers]	24
솔페리노 [Solferino]	25
수탁자 [Depositary]	25
신기술 [New technologies]	25
실향민 [Displaced persons]	26
심사 [Inquiry]	26

## 아

아동 [Children]	26
앙리 뒤낭 [Dunant, Henry]	27
억류 [Internment]	27
언론인 [Journalists]	28
여성 [Women]	28
예방조치 [Precaution]	29
용병 [Mercenaries]	29
이익보호국 [Protecting powers]	29
이행 [Implementation]	29
인권 [Human rights]	30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	30
인도주의적 접근 [Humanitarian access]	30
인질납치 [Hostage taking]	31

## 자

적대행위 [Conduct of hostilities]	31
적대행위의 직접가담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32
적십자사·적신월사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32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	32
전쟁범죄 [War crimes]	33
전쟁법(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교전규칙에 관한 법) [Ius ad bellum, Ius in bello]	33
전쟁의 수단과 방법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33
전쟁잔류 폭발물 [Explosive remnants of war]	34
전쟁포로 [Prisoners of war]	34
전투원 [Combatants]	35
점령지 [Occupied territory]	36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s]	36
주선 [Good offices]	37
중립영역/중립지대 [Neutral territory/zone]	37
중앙심인국 [Central Tracing Agency]	37
지뢰 [Mines]	38
집단살해죄 [Crime of genocide]	38
집속탄 [Cluster munitions]	38

## 차

첩자 [Spies]	39
추가협정서 [Additional Protocols]	39
7대 기본원칙 [Seven fundamental principles]	39
침략 [Aggression]	40
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40

## 타

테러리즘 [Terrorism]	41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	42
특별재판소 [Ad hoc tribunals]	42

## 파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s]	42
표장(식별표식) [Emblems(distinctive sign)]	43
피보호자 [Protected persons]	43

## 하

핵무기 [Nuclear weapons]	44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s]	44
화학무기 [Chemical weapons]	44
환경 [Environment]	45
휴전 [Ceasefire]	45

# 머리말

무력충돌법 또는 전쟁법(교전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한하여 적용되며, 적대행위 통제와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이 법은 특정한 전쟁이 적법한가(전쟁의 정당성) 여부는 논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유엔 헌장에서 다루어진다. 국제인도법은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의해 준수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상당 부분, 특히 적대행위에 관한 부분은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세화되었다.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선언과 조약이 채택되었다(‘헤이그 법’).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협약, 해전에 관한 1907년의 여러 협정, 독가스 및 덤덤탄 사용금지에 관한 1899년 선언 등이 그 예이다.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에 담겨있으며(‘제네바 법’)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육전에서의 군대 부상자 및 병자(제1협약)
- 해상에서의 군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제2협약)
- 전쟁포로(제3협약)
- 전시의 민간인(제4협약)

1949년 제네바협약은 1977년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두 개의 추가협정서로 보완되었고, 2005년에는 표장의 추가 도입에 관한 세 번째 추가협정서가 채택되었다.

1977년 두 개의 추가협정서 채택과 그 이후 적대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들의 보완으로 이제 ‘헤이그 법’과 ‘제네바 법’간의 엄격한 구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이 국제적인지 비국제적인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비국제적 무력충돌보다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규정이 훨씬 많으며, 이러한 규정들의 대부분은 오늘날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어, 원래의 규제 목적이었던 국제적 무력충돌뿐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주로 국가와 충돌 당사자(예: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도 다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규범을 준수하고, 위반행위를 방지하며,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특히 전쟁범죄)으로 고발된 개인을 소추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있다. 어느 국가가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의 무처벌을 방지할 책임은 국제사회에 부여되며, 국제사회는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제공동체는 특정한 분쟁에서 자행된 범죄를 소추하기 위한 특별 국제재판소를 설립하기도 한다(예: 구 유고 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충돌 당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제인도법 위반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국가는 적국이 국제인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약들을 준수해야 한다.

“알기 쉬운 국제인도법”은 국제인도법의 모든 개념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다. 본 책은 국제인도법의 주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독자들의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전투원과 민간인은 어떻게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가? 전쟁 중에는 왜 인간성의 기본적가치들이 무시되는 것일까?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이란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상이한 전쟁 양상에 처한 1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는 피해지역인 12개 국가\*에서 진행되었고 2000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p0758](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p0758)

\*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그루지아/아브카지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반논, 나이지리아, 필리핀,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 가

### 가서명, 서명, 비준 [Initials, signature and ratification]

국제조약의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인증행위로서 협정문의 모든 페이지 하단에 이니셜을 적는다(가서명).

조약문의 말미에 전권대표(협상 전권을 가진 국가의 대표)의 서명을 첨부한다. 서명식은 조약협상의 종료를 표시하며, 서명국에게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할 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명이 국가를 조약당사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비준이란 국가가 국제적 수준에서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다. 스위스에서는 법이나 조약에 의해 연방각의가 단독으로 서명하고 비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방의회(양원)가 조약의 비준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 강제실종 [Enforced disappearances]

'강제실종'이란 개념은 국가요원에 의해 사람이 체포 혹은 납치되었으나, 이들의 구금이 인정되지 않고,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나 구금장소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거부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실종자는 모든 법적 보호를 상실한다.

- » 인권
- » 무력충돌

### 고문금지 [Ban on torture]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행위,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방지협약과 같은 다양한 국제조약뿐 아니라 관습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2002년 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및 국내적 기관들이 교도소와 기타 구금 시설을 방문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문 방지 노력을 강화시켰다. 고문과 잔혹한 대우는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의해서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무력충돌과정에서 자행된 고문은 전쟁범죄로 취급되며,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자행된 고문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취급된다.

- » 관습국제법
- » 제네바협약
- » 추가의정서
- » 전쟁범죄
- » 인도에 반하는 죄

### 관습국제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조약과 더불어 관습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양대 법원의 하나다. 관습국제법이란 국가가 의무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으면서 일정한 태도를 취할 때를 가리킨다. 관습법으로 발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즉, 국가가 동일한 유형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반복해야하고, 이 때 자신이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한다.

대부분의 국제인도법 규정, 특히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은 이제 관습국제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 » 적대행위
- » 비국가 행위자

### 구별 [Distinction]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주민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본규칙 중 하나는 구별의 원칙이다. 즉, 충돌당사자는 전적으로 군사목표물만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쳐야 하며, 따라서 언제나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뿐 아니라 민간인과 전투원도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의 원칙은 전쟁 수행의 수단과 방법에도 제한을 가한다. 즉 특정한 군사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수 없는 무기나 전략은 금지된다.

- » 민간인
- » 민간물자
- » 전투원
- » 군사목표물
- » 무기
- » 전투행위의 수단과 방법

### 국내 소요사태 [Internal disturbances]

국내 소요사태와 국내적 긴장상태는 무력충돌만큼 격렬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인도법 대신 인권이 적용된다.

- » 무력충돌

### 국제연합(유엔) [United Nations(UN)]

국제연합(유엔)은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로, 그 회원국이 193개국에 이르며(2013년 말 기준), 국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2년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다. 1948년부터 그 이전까지 스위스는 다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기는 하였으나, 유엔에서는 옵서버 지위만을 갖고 있었다.

국제인도법은 유엔이 채택한 (특히 무기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제네바협약과 제1추가협약의 정서는 협약과 의정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대응하여 당사국들로 하여금 유엔과 협력하며 유엔 헌장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무기
- » 제네바협약
- » 추가의정서

### 국제인도법의 장려 [Promo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기술의 발전을 비롯,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세계적 싸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증가하는 현상, 분쟁에 관여하는 비국가 행위자의 증가 등은 오늘날 국제인도법이

직면해야 하는 도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의 기존 규칙이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만, 규칙의 이행은 여전히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규칙의 재확인과 보급은 물론, 일부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준수 및 이행의 수준을 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 테러리즘
- » 적대행위의 직접가담
- » 비국가 행위자
- » 보급

###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International Humanitarian Fact-Finding Commission]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IHFFC)는 베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국제공동체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기관이다. 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에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국가 내 무력충돌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의 전문가 15인은 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여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IHFFC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소와 구별된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사실 확정에만 국한된다. 위원회는 충돌 당사자들에게 발견 사실과 권고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선을 하기도 한다.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 추가의정서 제90조에 근거한다. 스위스는 이 협약의 수탁자로서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하고 있다.

- » 주선
- » 추가의정서
- » 제네바협약
- » 수탁자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제부상병 구호위원회를 계승하여 1876년 창설되었다. 국제적십자위

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구로서 스위스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제네바협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국제법상의 법 인격을 갖는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법의 법전화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 제네바협약
- » 무력충돌
- » 추가의정서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각국 적 십자사·적신월사,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으로 구성된다.

이 운동은 긴급 상황, 특히 무력충돌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이 운동은 7대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운동의 회원들은 제네바협약 당사국들과 함께 4년마다 국제적십자· 적신월회의를 개최한다.

-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 무력충돌
- » 7대 원칙
- » 제네바협약
- » 국제적십자· 적신월회의
- » 적십자사· 적신월사

###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최고 자문기관 이다. 통상 4년마다 개최되며, 제1차 총회는 1867년 파리에 서 개최되었다. 제네바협약의 당사국들을 비롯하여 국제적십 자·적신월 운동의 회원적십자사 대표자들이 인도적 문제를 논 의하고 결의의 형태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합한다.

- » 국제적십자· 적신월운동
- » 제네바협약

### 국제형사법 [International criminal law]

국제형사법이란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법이다. 국제법상의 범죄란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 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침략범죄를 일컫는다. 이러한 범죄는 그 영향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선다고 여겨지므로, 그 죄 를 범한 자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형사 소추의 대상 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형사법 집행기관이다.

- » 집단살해죄
- » 전쟁범죄
- » 인도에 반하는 죄
- » 침략범죄
- » 국제형사재판소

###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 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인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 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소추할 수 있 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기소 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국가가 필요한 수사과 기소를 진정으 로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만 개입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집단살해죄
- » 인도에 반하는 죄
- » 전쟁범죄
- » 침략범죄
- » 로마규정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근거는 로마규정(the Rome Statute) 으로, 2002년에 발효되었다.

### 군사목표물 [Military objectives]

국제인도법은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한다. 군사목표 물이란 그것의 성격, 위치, 목적 또는 활용이 군사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 노획, 무 력화(無力化)될 때 명백한 군사전략적 이익이 되는 것을 말 한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군은 잠재적 목표물의 특성을 언제 나 충분히 고려하고, 순수하게 군사목표물에 해당하는 것만 을 택해야 한다.

- » 민간물자

## 군사적 필요성 [Military necessity]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은 적대행위 수행상의 일반원칙이다. 군사력의 사용이 필요하고 비례성을 충족시킨다는 점이 항상 입증 가능해야 하며, 또한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해야 함은 물론, 민간인과 전투원을 항상 구별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근본적인 고려사항은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주의적 고려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다.

- » 비례성
- » 민간인
- » 전투원
- » 민간물자
- » 군사목표물
- » 적대행위

## 기본적 보장 [Fundamental guarantees]

국제인도법은 1949년 제네바협약에 근거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 보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장의 예로는 고문 그리고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의 금지, 구금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다양한 사법적 보장들이 포함된다.

- » 제네바협약
- » 고문금지



### 전투원들은 전쟁을 어떻게 겪고 있을까?\*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에서 전투원의 29%가 부상을 당하고, 18%는 포로가 되었으며, 포로의 거의 20%는 고문을 당했다. 포로의 43%는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했다고 폭로하였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나

## 난민 [Refugees]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야기될 수 있는 박해에 대한 정당한 공포로 모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자는 난민의 공식 정의에 부합한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은 1967년 의정서에 의해 보완되어 난민의 지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non-refoulement)은 특히 중요하다. 이 원칙은 생명이나 신체적 온전성이 위험에 처할 국가로 개인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 난민 최고대표 사무소는 세계의 난민 상황을 감시하고, 인도주의적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을 후원하며, 난민이 귀환할 때나 임시 비호국이나 새로운 거주국에서 생활을 시작할 경우 이들을 지원한다. 난민은 무력충돌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무력충돌
- » 국제연합(유엔)

## 내전 [Civil war]

비국제적 무력충돌.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 사이 또는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전투에 참여하는 비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발생한다. 국내적 소요사태와 긴장상태는 무력충돌로 간주되지 않는다.

- » 무력충돌
- » 국내 소요사태

# 다

## 다국적군 [Multinational forces]

다국적군 또는 국제군은 동일한 위임사항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국가들의 연합체이다. 다국적군은 반드시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에는 핵무기뿐 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포함된다. 대량살상무기는 대규모로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환경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기와 구별된다.

- » 핵무기
- » 생물무기
- » 화학무기
- » 무기
- » 환경

### 덤덤탄 [Dumdum bullets]

덤덤탄은 19세기말 소총의 탄약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탄환은 몸 속에 들어가면 속도가 줄고 재래식 총탄과는 달리 신체 조직과 골격을 파열시킨다.

무력충돌에서의 덤덤탄 사용은 그 잔인함과 비인도성으로 인하여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1899)에서 금지되었다. 덤덤탄은 이것이 발명된 인도 캘커타 교외지역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 » 무력충돌

# 라

### 로마규정 [Rome Statute]

로마규정은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조약이다. 로마규정은 개인이 범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뿐만 아니라,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규율하고있다. 이 규정은 1998년 7월 로마에서 채택되었으며 2002년 발효되었다. 스위스는 2001년에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 » 집단살해죄
- » 인도에 반하는 죄
- » 전쟁범죄
- » 침략범죄

### 리버, 프란시스 [Lieber, Francis]

미국 남북전쟁 당시 뉴욕의 교수 프란시스 리버는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군(연방군)을 위한 행위준칙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는 '리버 법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시에 적용될 법과 관습을 성문화한 최초의 시도로 알려져 있다. 리버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규범과 관습을 단일 문서로 종합하였으며, 이로써 1899년과 1907년 헤이그협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 » 헤이그협약

# 마

### 몽트뢰 문서 [Montreux Document]

2008년 9월 17일자 몽트뢰 문서에서는 민간군사보안기업(PMSC)이 무력충돌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국제법이 이들의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련의 모범사례를 담고 있다.

몽트뢰 문서는 국제법이 민간군사보안기업에 적용되며, 이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합치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서는 국제인도법과 인권에 대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용적이고도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 이 문서는 민간군사보안기업이 제기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지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 민간군사보안기업

### 무기 [Weapons]

국제인도법은 적군의 무력화라는 허용 가능한 목적을 초과하여 영향을 주는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전면 금지한다. 무기는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근거로 금지되는데, 그 사용으로 필연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지,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이 초래되는지, 무차별적 타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그러한 기준이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생화학 무기는 물론, 대인지뢰, 집속탄, 실명 레이저 무기, 덤덤탄 등 다수의 무기들이 국제협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금지사항 중 일부는 관습국제법에 해당한다. 핵무기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 » 불필요한 고통
- » 지뢰
- » 집속탄
- » 덤덤탄
- » 생물무기
- » 화학무기
- » 관습국제법
- » 핵무기

### 무력충돌 [Armed conflict]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어떠한 협정도 무력충돌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리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국가간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정부 당국과 조직화된 무장단체 사이에 또는 국가 내 그 같은 단체들 사이에서 무장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무력충돌은 존재한다.”

- » 국내 소요사태

### 문화재 [Cultural property]

문화재는 인류 문화유산에 있어 중요한 동산 및 부동산과 이것이 보관 또는 전시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문화재는 국제법에 따라 특별 보호의 대상이 된다. 문화재에 대한 적대적 행위뿐 아니라, 군사작전을 위해 문화재를 이용하거나 문화재를 복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절대적인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은 예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대상 문화재에는 식별표식을 한다.

- » 무력충돌
- » 복구
- » 헤이그협약
- » 점령지
- » 군사적 필요성

### 민간군사보안기업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

국가들이 분쟁상황에서 민간군사보안기업에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무 중에는 민간인과 민간 시설의 보호뿐만 아니라 군병력과 군대 시설의 보호, 군인과 경찰의 훈련, 정보수집, 자문, 보급, 무기체계의 운용 지

원을 비롯, 경우에 따라서 전투지원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민간 행위자들은 국제인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때로는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도 한다. 이들 기업의 직원들은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2006년 스위스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하여 무력충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군사보안기업들이 국제인도법 및 인권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이는 2008년 ‘몽트뢰 문서’ 발표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스위스는 이들 기업이 민간보안서비스제공자 국제행동규약(ICoC)의 준수를 스스로 감시하도록 지원한다.

- » 민간인
-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 인권
- » 몽트뢰 문서
- » 민간보안서비스제공자 국제행동규약



© ICRC / J. Björkvinsson

### 민간인들은 전쟁을 어떻게 겪고 있을까?\*

전쟁은 가족의 삶을 파괴시킨다. 이는 민간인 주민들이 전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겪는 경험이다. 인터뷰한 사람들의 40%가 가까운 친척과 소식이 끊겼다. 34% 이상은 자신의 집을 강제로 떠나야 했다. 인터뷰한 사람들의 31%는 자신의 가까운 가족이 전쟁으로 사망하였다고 응답했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민간물자 [Civilian objects]

국제인도법은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여, 민간물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민간물자에 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조항도 있는데, 예를들면 의료부대 및 그 수송수단, 예배장소, 문화재, 민방위 시설, 주민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 자연환경, 고도의 위험시설(예: 원자력 발전소와 댐) 등에는 식별표식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민간물자란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자를 말한다.

- » 군사목표물
- » 문화재
- » 환경

## 민간보안서비스제공자 국제행동규약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rivate Security Service Providers]

민간보안서비스제공자 국제행동규약(ICoC)은 스위스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의 주도로 2010년에 마련되었다. 이 규약은 민간보안서비스의 책임있는 제공을 위해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기반한 업계의 규칙과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약은 민간보안기업과 다양한 전문가 단체, 인도주의 및 시민사회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 » 민간군사보안기업
- » 인권

## 민간인 [Civilians]

1949년까지 국제인도법은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 및 포로를 보호하였다.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전쟁 중의 보호 대상을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했다. 1977년 추가의정서는 보호의 정도를 강화하고, 특별규정을 통하여 이를 특정 범주의 민간인(여성, 아동, 난민, 언론인)에게까지 확대했다.

- » 제네바협약
- » 추가의정서
- » 여성
- » 아동
- » 난민
- » 언론인
-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민방위 [Civil defence]

민방위란 무력충돌과 대형 재난상황에서 민간인 주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며 민간물자에 대한 피해를 가능

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및 구호조직이다. 민방위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공격은 금지되며, 이들은 주황색 바탕에 파란색 삼각형 표식으로 식별된다.

- » 민간물자

# 배

## 배신행위 [Perfidy]

국제인도법은 배신행위를 통해 적군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또는 포로로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신행위에는 신뢰를 악용할 의도 하에 적군의 신뢰를 얻어 그로 하여금 국제인도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거나 보호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모든 형태의 기만행위가 포함된다. 배신행위의 예로는 표식이나 표장을 악용하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무력화를 가장하여 거짓으로 피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

- » 표장

## 보급 [Dissemination]

국제인도법의 존중과 그 확보는 1949년 제네바협약 당사국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제네바 협약의 조항들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무력충돌 시뿐 아니라 평화 시에도 국제인도법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 제네바협약
- » 무력충돌

## 복구 [Reprisals]

국제인도법은 일반적으로 복구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히 민간인, 부상자, 전쟁포로와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구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복구를 금지하는 규정은 많다. 또한 문화재, 예배장소, 자연 환경 그리고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예: 원자력발전소와 댐)과 같은 특별한 대상에 대한 복구도 금지된다.

- » 피보호자
- » 민간인
- » 전쟁포로
-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 문화재
- » 환경

## 부상자, 병자, 조난자 [Wounded, sick and shipwrecked]

부상자와 병자는 의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적대행위를 포기한 군대의 일원이나 민간인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라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상병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이 부상자와 병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구조를 실시하고, 보호하고,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인도적 대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적인 이유 외에는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으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부여 받는다. 조난자, 즉 해상과 기타 수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군대 구성원과 민간인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부상이나 조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전투원은 전쟁 포로의 지위가 부여된다.

- » 민간인
- » 여성
- » 전투원
- » 전쟁포로

## 불필요한 고통 [Unnecessary suffering]

불필요한 고통 야기에 대한 금지는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가한다. 전투원은 전투능력을 상실하는데 필요한 고통만 감당해야 한다.

- » 전쟁의 수단과 방법
- » 전투원

##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s]

무장단체와 민간군사보안기업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오늘날 무력충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 » 무력충돌
- » 민간군사보안기업

## 비대칭 전쟁 [Asymmetric warfare]

오늘날의 전쟁은 더 이상 전적으로 전통적인 군대에 의해서만 수행되지 않으며, 비정부 무장단체도 관여한다. 전쟁은 갈수록 '비대칭'화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교전당사자들의 군사력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국가 또는 비정부) 당사자들이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인도법은 이러한 비대칭 분쟁에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성은 법규칙의 준수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국제인도법 규정을 준수하면 자신이 불리하게 된다고 일방 당사자가 판단한다거나, 기술적으로 열세인 당사자가 배신행위를 하거나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수단과 방법을 채택한다거나,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적의 법 위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 » 전쟁의 수단과 방법
- » 배신행위
- » 구별
- » 비례성



### 전쟁 중의 여성\*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빈번히 추방, 가족이산, 재산파괴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잃을 확률이 여성도 거의 남성만큼이나 높다. 총 40%의 여성이 가족과 소식이 끊겼으며, 32%는 강제로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다. 9%가 강간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으며, 또 다른 9%는 고문을 당했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비례성 [Proportionality]

비례성의 원칙은 적대행위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민간인 주민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는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 공격 개시 전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기대이익과 비교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영향이 과도한지 여부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

- » 군사목표물
- » 민간물자
- » 적대행위

들을 완성하고 강화시켰다. 더 나아가 선택의정서는 당사국들이 무장단체들의 18세 미만 아동 모병과 전투작전 배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군대나 기타 무장단체들이 15세 미만의 아동을 모병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 » 추가의정서
- » 전쟁범죄

# 사

## 생물무기 [Biological weapons]

생물무기는 세균병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는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생물무기는 인간과 동식물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재생산하고 방출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담고있다. 생물무기는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에도 피해를 준다. 생물무기의 사용은 이미 1925년부터 금지되고 있다. 1972년 생물무기협약은 미생물학적·세균학적 매개물이나 독성물질 그리고 이들의 운반수단이 되는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그 같은 무기를 폐기시키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 » 무기

## 솔페리노 [Solferino]

피에몽-사르디니아 왕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1859년 6월 24일 이탈리아 북부의 이 마을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로 인해 발생한 4만 명의 사상자가 아무 의료적 조치없이 전쟁터에 방치되었다. 솔페리노는 앙리 뒤낭과 관련된 장소로서, 그는 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구호기구(국제적십자위원회)를 설립을 이끌게되었다.

- » 앙리 뒤낭
-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수탁자 [Depositary]

국제조약의 수탁자란 공증인의 역할과 문서 보관, 문서의 인증, 통보·유보·선언의 접수·보관·전달을 주요 의무로 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스위스는 1949년 제네바협약, 1977년 제1차 및 제2차 추가의정서 그리고 2005년 제3차 추가의정서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협약의 수탁자이다.

- » 제네바협약
- » 추가의정서

## 소년병 [Child soldiers]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약 25만 명의 소년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일부는 강제로 징용되었지만, 지원병도 있다. 이들은 이념적 이유로 자원하기도 하지만, 단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자원하기도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2000년 선택의정서는 전투원으로 활동한 아동의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강제징집과 적대행위의 직접적 가담을 금지하는 제네바협약 2개 추가의정서의 규정

## 신기술 [New technologies]

최근 전쟁터에서는 신기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전투영역을 만들어냈다. 무력 충돌의 당사자들은 무인항공기와 같은 원격통제 무기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 또한 자동무기 체계도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의 전쟁터에서는 전투로봇과 같은 자동화 무기의 사용이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신기술은 일련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새로운 무기와 전투수단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실향민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은 쫓겨간 지역이 자국 내라는 점에서 난민과 구별된다. 이들은 모든 민간인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서 민간인의 강제 이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 난민
- » 민간인
- » 전쟁범죄

### 심사 [Inquiry]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침해나 중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양자간 심사와 기관 심사 사이의 구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관 심사를 위해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약에 의한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 국제인도주의 사실조사위원회
- » 추가협약

### 앙리 뒤낭 [Dunant, Henry]

스위스의 사업가인 앙리 뒤낭은 1859년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주에서 솔페리노 전투를 우연히 목격한다. 자신이 본 전쟁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앙리 뒤낭은 1862년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군대 의료진을 교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에 자발적 구호조직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각국이 군 병원과 의료진의 중립성을 인정하기로 공약함으로써, 이들의 보호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1863년에 이미 국제부상병구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1876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쟁터에서의 군대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1차 국제협약은 1864년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 솔페리노

### 억류 [Internment]

공식적인 형사 기소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부의 명령에 의한 구금. 국제적 무력충돌 과정에서 전쟁포로의 억류는 제네바 제3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인도법의 세부조항은 특히 구금 장소, 피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 노역 가능성, 생활조건 및 감금의 종료문제를 다룬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간인도 억류될 수 있다. 제네바 제4협약은 충돌 당사자가 피보호자에 관해 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같은 조치는 엄격한 조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된 법원이나 당국으로부터 1년에 최소한 2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전쟁포로
- » 무력충돌
- » 제네바협약
- » 민간인
- » 피보호자

# 아

### 아동 [Children]

국제인도법은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충돌 당사자들은 아동의 연령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아동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식량과 의료지원은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구금된 아동의 국적 및 시민적 지위의 불가침성과 가족과의 재결합을 특별히 보장한다. 전쟁고아나 부모와 헤어진 아동들은 그들의 종교 및 문화와 부합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언론인 [Journalists]

군대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종군기자를 제외한 언론인은 민간인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1949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따라 언론인은 특정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특별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다.

- » 민간인
- » 추가의정서
- » 제네바협약

## 여성 [Women]

국제인도법은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요구한다. 민간인으로서 여성들은 그들의 명예와 신체적 온전성을 위협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임신부와 어린 아동의 어머니는 안전지대로 이송되는 병자 및 부상자와 같은 지위를 향유하며, 제1순위로 지원을 받는다. 다른 특별규정은 군대 구성원인 여성의 보호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전쟁포로인 여성은 남성과 분리 수용되고 다른 여성들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도록 한다.

- » 민간인
-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 전쟁포로

## 예방조치 [Precaution]

군사작전은 오직 군사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를 막지는 못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인도법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민간인과 민간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방의 원칙으로 불린다.

- » 군사목표물
- » 민간인
- » 민간물자

## 용병 [Mercenaries]

용병은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총돌의 어느 당사자의 국적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총돌에 참여한다. 또한 용병은 총돌 당사자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주민이 아니다. 용병은 오직 개인의 물질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다.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용병에게 전투원과 전쟁포로의 지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 » 무력총돌
- » 추가의정서
- » 제네바협약
- » 전투원
- » 전쟁포로

## 이익보호국 [Protecting powers]

국제인도법은 총돌의 각 당사자가 중립국을 이익보호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익보호국 제도의 목적은 무력총돌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적군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이 적절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익보호국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선에 나설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통상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이익보호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 » 주선
-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이행 [Implementation]

이행이란 국제인도법 준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행에 있어 일차적 책임을 진다. 국가는 전쟁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형법을 포함한 국내법 속에 이러한 조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국

### 전쟁에 대한 제한\*

인터뷰한 사람의 절대다수가 민간인에 대한 비침략 원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64%는 오직 전투원에게만 적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민간인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3%만이 전투원과 민간인이 모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전면전이란 용어를 수긍했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ICRC/B. Heger

제인도법을 준수하고 그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자신이 그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기소를 위해 다른 체약국으로 그를 인도해야 한다. 국가는 국제인도법의 보급에 대한 책임도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제인도주의 사실조사위원회, 특별재판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이행의 책임을 진다.

- » 전쟁범죄
- » 국제인도주의 사실조사위원회
- » 특별재판소
- » 국제형사재판소

### 인권 [Human rights]

인권은 인간으로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를 의미한다. 인권은 국제적 수준의 협정, 협약, 결의, 선언 등은 물론 관습 국제법을 통하여도 보호된다

### 인도에 반하는 죄 [Crimes against humanity]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커다란 고통이나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된 행위로서,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행해진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국제법상 근본 원칙을 위반한 자유의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입신, 강제불임, 기타 이에 상당하는 중대한 성폭력,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사유 또는 성별에 근거한 박해, 인종차별, 그리고 강제실종 등이 포함된다.

- » 고문금지
- » 강제실종

### 인도주의적 접근 [Humanitarian access]

민간인 주민이 식량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인도법은 관련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인도주의적이고 공정하고 차별없는 원조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동의 조항의 예외로서, 점령상황에서의 점령군은 인도주의적 구호를

수락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국가로 하여금 구호배송물의 신속하고 막힘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민간인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기구들이 무력충돌 상황에서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충돌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리적 혹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료적 절차가 장애가 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민간인
- » 무력충돌
- » 점령지

### 인질납치 [Hostage taking]

인질납치란 제3자로 하여금 일련의 행동을 취하도록 강제하려는 목적에서 사람을 불법적으로 붙잡아 구금하고 억류하며, 그 3자가 요구사항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인질을 풀어주지 않고 목숨이나 신체의 온전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인질납치는 전쟁범죄로 간주되며 무조건 금지된다.

- » 전쟁범죄

# 자

### 적대행위 [Conduct of hostilities]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전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인도법은 허용되는 군사작전, 전술, 무기 등을 명기하고 있다. 널리 수락되고 있는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두 가지는 민간인 주민이나 민간물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금지, 무차별적 공격 금지, 민간인 사상자수와 민간물자 피해를 가능한 한 피하거나 줄이려는 예방 조치를 채택할 의무 등과 같은 다수 특정 규칙의 근거가 된다.

- » 전투의 수단과 방법
- » 무력충돌
- » 구별
- » 비례성
- » 민간물자
- » 예방조치
- » 민간인



## 적대행위의 직접가담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오직 전투원만이 적대행위, 다시 말해 전투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 인정된다.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민간인은 가담 기간 동안에는 공격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민간인들은 적대행위와 관련한 활동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간의 기능과 군사적 기능간의 구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적대행위에의 직접 가담의 개념을 설명하는 안내자료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6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토론과 연구의 결실이다.

- » 민간인
- » 무력충돌
- » 점령지

## 적십자사·적신월사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는 적십자운동의 목표와 기본원칙의 이행을 감독한다.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국이 인도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국에는 하나의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만을 둔다. 적십자사와 적신월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련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 »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
-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 적용된다. 이 법은 무력충돌의 개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군사작전이 전반적으로 종료되거나 점령이 종식될 때까지 적용된다. 일정한 규정들은 상황이 사실상 지속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예

를 들어 적대행위가 끝난 이후라 할지라도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해 전쟁포로들은 보호된다.

- » 무력충돌
- » 전쟁포로
- » 제네바협약

## 전쟁범죄 [War crimes]

전쟁범죄란 사람과 물자를 보호하려는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의 심각한 위반을 의미한다. 전쟁범죄에는 특히 고의적 살해, 고문, 추방, 학대, 불법적 구금, 인질납치, 민간인과 민간물자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아동 징병 등이 포함된다.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의 전쟁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할 의무를 진다.

- » 제네바협약
- » 무력충돌
- » 고문
- » 인질납치
- » 민간인
- » 민간물자

## 전쟁법(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법과 교전규칙에 관한 법) [Ius ad bellum, Ius in bello]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전쟁법은 무력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다룬다. 이는 유엔 헌장에 의해 규율 된다.

교전규칙으로서의 전쟁법은 충돌의 합법성에 상관없이 무력 충돌에 적용될 뿐이다. 이 법은 전쟁 수행방식과 희생자 보호를 규율한다. 국제인도법과 이러한 전쟁법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국제연합(유엔)
- » 무력충돌

## 전쟁의 수단과 방법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전사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배신행위, 공포 확산, 기아, 약탈, 인질납치, 민간 주민이나 비군사 목표물에 대한 복구, 추방, 전쟁포로나 피보호자의 강제징병, 무차별적 공격 그리고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보호 거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금지된다. 불필요한 고통

을 야기하는 무기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많은 협약들이 무기의 선택을 제한하고 특정 무기의 제조, 비축, 이전 및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 » 배신행위
- » 인질납치
- » 복귀
- » 전쟁포로
- » 피보호자
- » 불필요한 고통
- » 무기
- » 민간인

### 전쟁잔류 폭발물 [Explosive remnants of war]

'전쟁잔류 폭발물'이란 폭발되지 않은 채 땅에 남아 민간인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되는 장치나 탄약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1980년 특정 재래식무기에 관한 협약(CCW)에 부속된 2003년 전쟁잔류 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적대행위가 일단 종료되면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 있는 그러한 잔류물들을 표시·제거 또는 폐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국은 문제의 지역을 정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정서는 잔류 폭발물을 남게 하는 무기의 배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 » 무기
- » 민간인

### 전쟁포로 [Prisoners of war]

전쟁포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적군에 의해 체포된 전투원이다. 군대의 직접적인 일원은 아니지만 군대를 수행하는 상선과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 및 기타 사람들도 전쟁포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구금조건과 노동력의 활용문제는 제네바 제3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전쟁포로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단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 국제인도법 상 합법적인 전쟁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 전쟁포로는 자신의 전쟁포로로서의 지위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전쟁포로를 관리하는 의료 및 종교 인력은 전쟁포로로 간주되어서는 안되지만, 전쟁포로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반면, 용병과 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전쟁포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 » 전투원
- » 무력충돌
- » 제네바협약
- »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 » 용병
- » 첩자

### 전투원 [Combatants]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충돌 당사자 군대의 의료 및 종교 인력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은 전투원으로 간주된다. 전투원은 합법적인 전쟁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소추되거나 법정에 소환되지 않는다('전투원의 특권'). 경우에 따라서 자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봉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전투원 지위가 인정되며, 민병대원, 의용병, 저항운동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체포된 전투원은 전쟁포로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무력충돌
- » 전쟁포로



©ICRC/J. Barry

### 인간의 존엄성\*

전쟁행위는 언제 용인할 수 없게 되는가? 전쟁행위는 언제 모든 협약을 위반하게 되는가? 전쟁지역에서 인터뷰한 응답자 중 48%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37%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일정한 전쟁행위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점령지 [Occupied territory]

점령지는 외국군대의 사실상의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점령에 대한 무력저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점령의 합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인도법은 모든 점령상황에 적용된다. 이는 현지 주민의 권리와 점령군의 의무를 규율한다.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령군은 기존법을 존중하면서 공공질서와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또한 점령군은 현지 주민에게 식량과 의료보호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s]

제2차 세계대전 말미에 무력충돌에 애초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비전투원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규칙들은 주로 민간인, 부상자, 병자, 조난자 및 전쟁포로에 적용된다.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의 핵심을 구성한다.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이자 수탁자로서 스위스는 특별한 의무를 담당한다.

- » 민간인
-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 전쟁포로
- » 추가의정서
- » 수탁자



#### 제네바협약\*

위키지역에서 인터뷰한 응답자 중 39%는 이미 제네바협약을 알고 있었다. 이 협약에 대한 인지는 인도주의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적군 부상자나 투항자를 도울 의사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협약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38%가 돕겠다고 하였다. 협약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 중에서는 31%만이 돕겠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56%는 제네바협약을 통해 전쟁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주선 [Good offices]

둘 이상인 당사자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제3자의 노력을 설명하는 일반적 용어이다. 주선의 목적은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개시하는데 있다. 주선은 기술적 또는 조직적 성격의 지원(예: 충돌 당사자들을 위한 회의장 제공), 중개, 국제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국가는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나 국제인도주의사실조사위원회 등도 분쟁 종식을 지원하기 위해 주선을 할 수 있다.

- » 평화유지활동(PKO)
-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 국제인도주의 사실조사위원회

### 중립영역/중립지대 [Neutral territory/zone]

중립영역은 충돌의 당사자가 아니며 영구적으로 또는 해당 충돌과 관련해서 중립을 선택한 국가의 영토를 의미한다.

중립영역이란 부상자와 병자는 물론 민간인과 비전투원을 수용하기 위해 충돌 당사자 영토 내에 마련된 중립지대(중립화 지대, 병원 및 안전지대, 비무장 지대)와는 구별된다.

-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 민간인
- » 전투원

### 중앙심인국 [Central Tracing Agency]

중앙심인국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후원 하에 설립되어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전쟁포로의 권리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포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가족들의 알 권리를 보호했던 중앙전쟁포로국의 후속기관이다. 이 기관은 각국의 공식적 정보기구, ICRC 대표단 그리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이 기관은 실종자 수색작업조정, 전쟁포로 및 기타 피구금자들에 관한 정보전달, 포로이송 및 본국 송환진행, 소식전달 및 가족간 상봉을 지원한다.

-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 전쟁포로

## 지뢰 [Mines]

지뢰는 사람(또는 동물) 또는 차량(대인 지뢰/대차량 지뢰)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접촉을 통해 폭발하는 무기다. 지뢰는 지상, 지하, 지표 근처 또는 다른 형태의 표면에 배치될 수 있다. 1980년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의 제2추가협약은 모든 종류의 육상지뢰의 배치와 이전을 규제한다.

1997년 '오타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생산 및 이전을 금지한다. 또한 이 협약은 지뢰 제거와 파괴는 물론 지뢰 피해자의 지원 조치와 같은 문제들도 다룬다. 그러나 오타와협약은 아직 가장 중요한 군사 강국들의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 무기

## 집단살해죄 [Crime of genocide]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집단살해이다. 이 행위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살해
-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 출산을 금지하거나 특정 집단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
-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

유엔은 집단살해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협약을 1948년에 채택했다.

» 아동  
» 국제연합(유엔)

## 집속탄 [Cluster munitions]

집속탄은 베트남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사용되었다. 집속탄은 십여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소형 폭탄(자탄)을 외피가 감싼 구조로서, 넓은 지

역으로 퍼지게 된다. 집속탄은 무차별적으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인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자탄들이 불발탄인 상태로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인 주민에게 장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2008년 5월 더블린에서 집속탄의 제조, 비축, 이전 및 배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비축물의 파괴와 제거 및 희생자 지원도 의무로 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2년 7월 17일 이 협약을 비준했다.

» 무력충돌

# 차

## 첩자 [Spies]

첩자란 적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비밀리에 얻고자 하는 사람이다. 민간인 복장으로 활동하는 첩자에게는 전투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면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첩자는 전투원으로 인정되며,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 전투원  
» 전쟁포로

## 추가협약 [Additional Protocols]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두 개의 추가협약이 1977년 6월 8일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제1추가협약은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것이고, 제2추가협약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대한 것이다. 적(赤)수정을 추가적인 공식 표장으로 채택한 제3추가협약은 2007년 1월 14일 발효되었다.

» 제네바협약  
» 무력충돌  
» 표장

## 7대 기본원칙 [Seven fundamental principles]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은 다음의 7대 기본원칙을 지지한다.

- 인도: 인류의 고통을 방지하고 경감시키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공평: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한다.
- 중립: 군사적 상황, 정치, 민족, 이념,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을 취한다.
- 독립: 군사적 상황, 정치, 이념, 종교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
- 봉사: 구호는 자발적이고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제공된다.
- 단일: 각국에는 하나의 적십자만을 둔다.
- 보편: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 침략 [Aggression]

침략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여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지만, 두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명백한 상황에서의 군사적 자위권의 행사와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경우이다.

» 침략범죄  
» 국제형사법

### 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그 행위의 성격, 심각성,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침공, 군사점령, 무력을 사용한 병합, 한 국가의 항구나 연안의 봉쇄 등은 침략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침략범죄자는 그러한 행위의 실행 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2010년 6월 11일 캄팔라에서 채택된 발효조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로 당사국들이 관할권의 활성화를 결정하기 전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

# 타

## 테러리즘 [Terrorism]

‘테러리즘’의 개념은 국제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인권, 국제인도법은 테러리즘과 관련된 많은 행위와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민간주민이나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 인질납치와 같이 일반적으로 테러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국제적이거나 비국제적 무력충돌상황에서 모두 금지된다. 더 나아가 국제인도법은 민간주민 사이에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국제법  
» 인권  
» 민간물자  
» 인질납치



### 보호기구\*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는 무엇일까? 인터뷰 응답자의 42%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적십자사/적신월사를 꼽았다. 32%가 유엔이라고 답해 국제적 인도주의 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앞서 2위를 차지했다. 18%의 응답으로 종교 지도자가 4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84%는 적십자 또는 적신월표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테러와의 전쟁” [“War on Terror”]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은 법적 개념이 아닌 정치적 개념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4년과 2005년 마드리드와 런던에서 발생한 공격사건처럼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방지 노력을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테러리즘 방지를 다루는 인권과 국내법 그리고 다양한 국제협약 등이 그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 » 무력충돌
- » 인권
- » 테러리즘

## 특별재판소 [Ad hoc tribunals]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분쟁으로 인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를 처벌하기 위한 두 개의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립하였다. 이들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형사재판소와 달리 한시적이며 특정 분쟁에 국한된다.

# 파

## 평화유지활동 [Peacekeeping operations]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분쟁해결과 위기관리를 위해 국제공동체가 마련한 수단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민간 및 군사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이러한 활동은 더욱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인도주의적 활동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와 평화강제, 분쟁예방, 평화구축과 공고화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임무에 관한다.

유엔의 위임이나 후원 하에 이뤄지는 평화유지와 평화강제 활동에 있어서, 참여 군대는 다른 당사자와 함께 무력충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마다 국제인도법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 국제연합(유엔)
- » 무력충돌
- » 다국적군

## 표장(식별표식) [Emblems(distinctive sign)]

무력충돌에서 인식 가능한 표장은 무엇보다도 군대 및 민간 의료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구호기구의 건물과 소속 인력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보호기능). 표장 자체가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이러한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평화시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적수정사는 그들의 창설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표장들을 사용할 수 있다(표시기능).

1949년 제네바협약은 적십자, 적신월과 적사자태양(1980년 폐기)을 표장으로 승인하였다. 종교적이거나 기타 이유로 기존 표장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 적수정이 표장으로 추가 승인되었다. 보호기능을 가진 다른 표장으로는 협상이나 항복을 원하는 전투원을 위한 백기, 민방위 표장인 주황색 바탕에 파란 삼각형 등이 있다. 이러한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 » 무력충돌
- » 제네바협약
- » 전투원
- » 민방위

## 피보호자 [Protected persons]

1949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피보호자’라고 한다. 이에겐 부상자, 병자, 조난자, 전쟁포로, 적군 영토나 적군 통제 하에 있는 민간인 그리고 점령 지역에 있는 민간인이 포함된다. 여성과 아동 뿐 아니라, 의료 및 종교 인력, 구호 및 시민보호 요원, 외국인, 충돌 당사자 영토에 있는 난민과 무국적자 등도 통상 피보호자로 간주된다.

- » 제네바협약
-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 전쟁포로
- » 민간인
- » 점령지
- » 난민
- » 여성
- » 아동

# 하

## 핵무기 [Nuclear weapons]

이 범주의 무기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열핵)과 중성자탄이 포함된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과 같은 원자폭탄 자체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으나, 핵무기는 실험, 제조, 비축 등에 관한 다른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관습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을 통한 핵무기의 포괄적 금지는 없을지라도, 이의 사용은 그 충격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나아가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의 규칙, 특히 구별, 비례성, 예방의 원칙에 과연 부합될 수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 » 관습국제법
- » 구별
- » 비례성
- » 예방조치

##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s]

1899년과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두 차례의 평화 회의에서 전쟁 수행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협약들이 채택되었다. 눈에 띄는 하나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이에 대한 두 개의 추가 의정서가 1954년과 1999년에 채택되었다.

- » 무기
- » 무력충돌
- » 추가의정서
- » 전쟁행위
- » 문화재

## 화학무기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는 건강을 위협하고, 인간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저항을 불가능(전투력의 상실)하게 만들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식량, 음료 및 기타 물품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시 화학무기 사용으로 초래된 처참한 결과로 질식을 유발하거나, 유독하거나, 기타 유사

한 가스의 사용이 1925년에 금지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3년에는 국제협약이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이의 폐기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 »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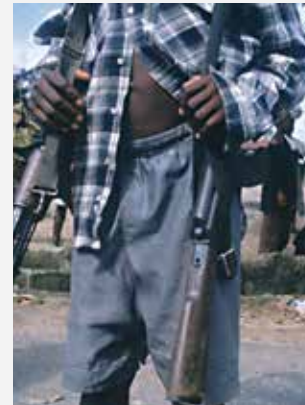
## 환경 [Environment]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 및 전투방법은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관습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은 환경의 보호를 보장한다.

- » 추가의정서
- » 제네바협약
- » 관습국제법
- » 구별
- » 비례성

## 휴전 [Ceasefire]

휴전이란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종료이다. 이 군사적 개념은 무력충돌의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른 합의와 일방 당사자에 의한 모든 군사활동의 일방적 종료 모두를 가리키며, 일정한 기간과 지역에 한정될 수 있다.



### 전쟁범죄\*

인터뷰한 응답자의 76%는 전쟁범죄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16%는 재판과 처벌을 진행하기 보다는 사건을 과거사로 돌리며 잊고 있다고 답했다.

56%는 전범자 처벌은 그들의 본국 정부와 재판소, 군 당국 또는 정치적 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36%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런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고 답했다.

\* 출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전세계적 설문조사 '전쟁과 사람들(People on War)'.

## 출판

발행인:

스위스연방 외교부(FDFA)

3003 Bern, Switzerland

[www.fdfa.admin.ch](http://www.fdfa.admin.ch)

디자인:

FDFA 시각커뮤니케이션, 베른

표지 사진:

Jeroen Oerlemans / Panos

감수: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주문 문의:

주한스위스대사관

[seo.vertretung@eda.admin.ch](mailto:seo.vertretung@eda.admin.ch)

담당자 연락처:

FDFA Directorat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dv@eda.admin.ch](mailto:dv@eda.admin.ch) (영어로 문의)

본 출판물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판으로도 보실 수 있으며 [www.fdfa.admin.ch/publications](http://www.fdfa.admin.ch/publications)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베른, 2014 (제2개정판)의 한국어 번역본



